금융위원회

보 도 참 고 자 료



7071	ØΙ
市农台 青	74
	금융감독
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4.9.(목)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담 당 자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25) 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954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욱 배 팀장 (02-3145-8022)

제 목 :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

- '20.4.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
 - 단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
- □ '20.4.9.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**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**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.
 - 이에 따라, **타 은행도** 이와 동일한 **빅데이터 부수업무**를 **신고 없이 영위**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* 단,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('20.8.5일)이후 가능
 - ※ '신한은행'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내용 상세
 - (업무 내용)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(가명정보, 익명정보, 통계정보 등)로 변환후,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상권분석,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
 - (업무 절차) 데이터 자문(제공) 서비스 계약 및 제공
 - ① 자문 서비스(데이터 셋) 개발, ② 서비스(데이터 셋) 홍보, 마케팅
 - ③ 구매 회사 협의: 서비스(데이터 셋) 가격 및 커스터마이징 여부 등
 - ④ 계약 체결 및 서비스(데이터 셋) 제공
 - ⑤ 서비스(데이터 셋) 사용 및 수수료 정산
- □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 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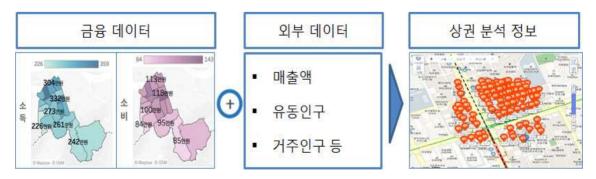
참 고

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

- 급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됩니다.
 - 금융회사의 **빅데이터 셋 개발** 및 이를 활용한 **내부 업무 개선**, **빅데이터 분석·컨설팅·유통** 등이 활성화됩니다.
 -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.
- ② **금융회사의 빅데이터**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·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.
 - ①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, 지역,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, 마케팅*,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.
 - * 예시) 금융 데이터와 지리, 상권 정보 등을 결합·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



- ② 지역별 소득, 소비, 저축,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,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* 등이 가능해집니다.
 - * 예시)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, 유동인구,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·활용



③ 데이터 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.